

규제연구 제25권 제2호 2016년 12월

규제비용관리제를 적용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등록규제의 규제부담 실증분석

이 광 훈* · 김 권 식**

우리나라 규제개혁에 관해서는 기존의 수많은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어 있으나 과학기술 분야의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도출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에 실제 등록되어 있는 규제들을 분석한 실증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1960년부터 이명박정부 시기 동안 공포된 미래창조과학부 관할 등록규제(총 530건)를 대상으로 동 규제들의 특성 및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규제비용관리제를 활용하여 개별 규제들의 규제부담을 측정하였으며, 나아가 규제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 및 방송정보통신 관련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규정된 등록규제의 현황 및 특성 파악을 통하여 향후 과학기술 관련 법제 개선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용어: 규제부담, 과학기술규제, 연구개발, 정보통신, 규제비용

* 제1저자,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swiss@kangwon.ac.kr)

** 교신저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문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kskim87@snu.ac.kr)

*** 본 논문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2016년 원외소액공모과제 사업 결과물을 활용하여,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14S1A3A2044898)

접수일: 2016/11/08, 심사일: 2016/12/08, 게재확정일: 2016/12/08

I. 서론

우리나라 규제개혁에 관해서는 기존의 수많은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어 있으나 과학기술 분야의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도출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에 실제 등록되어 있는 규제들을 분석한 실증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에 조응하는 과학기술 관련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박근혜정부에서 규제개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규제비용총량제(現 규제비용관리제)를 적용한 기존 과학기술 규제의 실태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을 통하여 관련 부처의 증거기반 규제(evidence-based regulation) 정책추진을 위한 경험적 자료 구축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과학기술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규제비용관리제가 규정하고 있는 규제부담 측정방식을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2장에서는 규제부담의 측정 및 과학기술규제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에 대해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규제비용관리제를 활용한 분석방법론을 서술한 다음, 4장에서 분석결과와 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 후 마지막 5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1. 규제지수 관련 기존연구

최근 규제개혁의 경향은 단순한 규제의 개수, 즉 양적 차원의 규제총량 관리를 넘어 고품질 규제를 위한 총체적 규제관리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¹⁾. 규제개혁의 중장기적 계획에 근거한 전략 수립과 체계적인 규제정책집행 및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규제의 특성 및 유형별 강도, 파급효과 등 다양한 영향요인을 고려한 규제부담의 측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여러 국제기구들과 규제연구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규제지수를 활용하여 왔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OECD의 규제관리체제 지수(Indicators of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이하 RMS 지수), 생산물시장 규제지수(Product Market Regulation Indicator, 이하 PMR 지수), 비제조업종 규제지수(Indicators of Non-manufacturing Regulation, 이하 NMR 지수)와 세계은행(World Bank)의 Doing Business 지수 및 세계 거버넌스 지수(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중 규제품질(regulatory quality) 지수 등을 들 수 있다(이종한, 2013: 36-60 참조).

한편,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인 이종한(2013)은 Al-Ubaydli & McLaughlin(2012)²⁾을 원용하여 한국의 전체 법령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의 두 자리 단위 하위 산업 설명문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산업분류를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규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 전반의 규제수준을 측정하여 표준산업별 규제지수를 작성하였다³⁾. 본 연구는 이종한

1) 한국 정부 역시 그간 규제부담을 감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수는 증가추세를 보여 규제개혁 성과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으며, 이에 2004년에 규제총량제를 시행한 바 있으나, 규제내용이나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규제건수만을 기준으로 운영한 결과 규제개선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제부담 감축이 가능한 방안으로서 박근혜정부는 영국정부가 2011년 도입한 One-in, One-out 원칙에 기반하여 규제비용총량제를 시행함으로써 규제비용총량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김동연, 2014).

2) Al-Ubaydli & McLaughlin(2012)는 미국의 연방규제를 대상으로 산업별 규제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는데 연방규제집의 타이틀별로 사업의 키워드를 이용하는 텍스트분석을 실시하였다(이종한, 2013: 103 재인용). 구체적으로 미국 표준산업분류의 각 산업의 키워드를 연방규제집 타이틀별로 검색하여 특정 산업의 키워드 검색건수를 타이틀별로 합계하여 해당 산업의 규제의 산업연관도를 작성하였다.

3) 구체적으로 모든 등록규제의 산업관련도에 개별 규제가 갖는 특성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최종적인 산업의 규제지표를 측정하였다(이종한, 2013: 102-114). 규제성격의 대분류에 따라 경제적 규제에 3, 사회적 규제에 2, 행정적 규제에 1의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기존 규제의 강화나 완화에도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규

〈표 1〉 주요 규제지수 현황

지수명	측정 목적	구성 체계
OECD의 RMS 지수	1995년 OECD 이사회가 도입한 고품질의 규제 의사결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회원국들이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1998년, 2005년, 2008년, 2009년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회원국을 대상으로 규제관리 체계를 평가하는데 활용.	규제정책, 규제기관, 규제절차 및 규제수단으로 유형화되며 개별 유형들은 각각의 설문 문항들로 구체화 됨. 2008년 조사의 경우 총 4개의 Section(규제정책의 내용, 규제품질 수단, 규제품질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규제품질의 역동적 측면)의 19개 영역 별 86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됨.
OECD의 PMR 지수	OECD국가들의 생산물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의 다양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1998년 고안되었으며,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1998년, 2003년, 2008년, 그리고 2013년 총 네 차례에 걸쳐 측정됨. 규제가 생산물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어떠한 정책 또는 규제가 생산물시장에서의 경쟁을 어느 정도 증진 또는 감소시키는지 측정.	OECD 규제지수설문(OECD Regulatory Indicators Questionnaire)을 회원국에 배포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응답은 각 영역별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하고 단일 OECD 연락기관에 의해 조정됨. 2013년 조사의 경우, 설문을 통해 총 12개 Section(전기, 가스, 통신, 우편, 운송, 용수, 소매유통, 전문서비스업, 다른 영역들, 창업을 위한 행정적 요건, 외국인 처우, 기타) 별 364개 항목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짐. PMR 지수의 체계는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세 개의 상위지수(국가통제, 기업활동장벽, 무역과 투자장벽)의 단순 평균으로 계산되고 2013년 시행된 PMR 지수 추정에서 활용된 하위지수는 총 18개로 구성됨.
OECD의 NMR 지수	제조업분야와는 다른 비제조업분야의 특성, 즉 해외시장으로부터의 상품 수입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중간 및 최종소비자들의 선택이 제한적임을 고려하여 2001년부터 측정됨.	NMR 지수는 2008년부터 PMR 지수에 통합되어 세 가지 하위 분야별 규제(Sector regulation)인 ETCR, Professional services, Retail distribution으로 구성됨. 구체적으로 ETCR은 통신, 전기, 가스, 항공수송, 철도수송, 도로화물수송으로 세분되며 Professional services는 법률서비스, 회계서비스, 공학서비스, 건축서비스로 세분되고, Retail distribution은 독립적으로 구성됨. 분야별 규제지수들은 하위지수에 가중치를 더한 평균값으로 계산되며 2013년 시행된 ETCR 지표 추정에서 활용된 하위항목은 총 7개로서 전문서비스지표 추

제 유형(사전승인, 투입기준, 산출기준, 정보규제)에 따라 1에서 4까지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규제는 규제의 성격과 세부유형, 규제변동 상태, 규제사무유형 등에 따라 -48에서 +72의 변동범위의 가중치 값을 갖게 된다.

		정에 사용된 하위항목 및 소매유통 지표 추정에 사용된 하위항목은 각각 1개씩 구성됨.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지수	상이한 문화, 역사, 전통 및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세계 각 나라들의 기업 환경에 대한 의미 있는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각 나라의 가장 큰 도시에서 일정 규모를 가진 가상의 기업 설립 및 운영을 전제로 하여 창업, 고용, 계약이행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기업환경을 평가함.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생애주기(Life Cycle)과정 전반을 측정함으로써 어느 국가에서든지 공통적으로 거치게 되는 행정 절차와 비용을 중심으로 평가함.	2004년 5개 항목, 133개국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2015년 조사의 경우 189개 국가를 대상으로 창업, 고용, 계약이행, 파산회복, 신용거래, 재산등록, 투자자보호, 납세, 무역, 건설허가, 전력수급 등 11개 영역에 대해 평가. 189개국의 11,400명 이상 변호사, 판사, 화물운송업자, 엔지니어, 건축가, 기업컨설턴트, 정부관료 등으로 구성된 각 국 전문가에게 설문지를 보내고 취합된 설문을 바탕으로 영역별 지수를 측정하며, 2015년 측정된 주요 세부항목은 창업, 건설허가, 건물품질관리, 전력수급, 자산이전 효율성, 토지에 대한 행정품질, 신용거래, 투자자 보호, 납세, 무역, 상업분쟁해결 효율성, 재판과정의 품질, 파산회복, 파산체계의 강도, 노동시장 규제 등임.
World Bank의 regulatory quality 지수	215개 국가의 전반적 국정관리를 6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세계거버넌스 지수(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의 하위 지수로서 규제품질(regulatory quality)은 시장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가격통제, 미비한 은행감독제도 등)의 빈도, 그리고 무역이나 사업개발에 있어서 과도한 규제부담 등을 측정함.	1996년에 시작된 이래 2002년까지는 2년 단위로, 2002년 이후로는 1년 단위로 측정된 규제품질 지수는 산출 과정에 다양한 외부자료들이 활용되며 예컨대 World Economic Forum, Heritage Foundation,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등 다양한 연구기관들의 결과를 가중 평균하는 과정에서 각 결과들 간의 이질성이나 차이, 신빙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Unobserved Component Model(UCM)을 활용하여 각 결과물들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함.

자료: 이종환(2013: 36-60) 재구성

(2013)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의 실제 법령 조문 내용들을 대상으로 규제부담을 측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과학기술규제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우리나라 과학기술규제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승일 외(2007)는 1990년 초 중반부터 국가 산업발전을 위한 발전주의적 규제체제를 시장주의적 규제체제로 전환시키는

우리나라 국가발전 방향이 장기적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규제환경과 기술혁신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다음, 이를 세분하여 대기업집단 규제, 금융규제, 지식재산권 규제,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기업통제수준이 낮을수록 기업의 R&D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탈규제 방향만이 능사가 아니라 기업과 산업의 발전단계에 따라 상이한 규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점차 영미식의 시장지향적 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는 기업이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를 구축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대기업집단규제, 금융규제, 지식재산권 규제, 환경 규제 이외의 다른 규제 영역은 다루지 못하였고, 정부규제의 효과 부분만을 규명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규제의 특성 및 유형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이러한 규제가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성공적인 과학기술 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심영섭(2013)은 영역과 장르, 경계를 건너뛰는 융합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전개되는 기술 및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맞추어 산업활동과 비즈니스의 경계를 지나치게 구분하여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창의와 융합을 조장하고 뒷받침하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네 가지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장에서 창의성과 자율성,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는 융합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진입규제도 이러한 기초에서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여야 한다. 둘째, 각종 규제의 규율방식을 기존의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과감하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현존 시장의 경쟁축진은 물론 잠재적인 시장의 진입가능성, 즉 시장경합성(Market Contestability)을 제고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넷째, 법과 제도를 통한 규제와 함께 실제 시장에서 시행되는 관행을 바꾸는 작업 역시 중요하다. 동 연구가 과학기술분야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모든 규제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전체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김이경 외(2015)는 과학기술기본법 등 100여개 과학기술관련 법령 및 미래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2014년 기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957건 포함 총 3696건의 규제를 발굴하였다. 이 중 오분류된 약 10%의 규제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규제들을 대상으로 성격별 유형분류를 실시한 결과, 경제적 규제 33.7%, 사회적 규제

6.8% 및 행정적 규제 5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 연구는 성격별 규제유형 외에 규제강도 등을 고려한 정교한 유형분류를 하지 못하였으며, 단순 건수 위주의 통계분석에 그침으로써 실제 개별규제가 주는 규제부담의 정도를 측정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권식·안승구·이종한·이광훈(2016)은 규제가 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자료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포착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의 산업별 규제지수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기술혁신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기술혁신 수준에 각 제조업별 규제의 정도가 미치는 영향을 서열로짓 및 이항로짓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조업 분야별 규제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부문에 속한 기업들의 기술혁신 활동 및 성과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특정 제조업 부문의 규제저량(stock)보다는 규제유량(flow)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논문이 우리나라 산업별 규제수준의 척도로서 산업별 규제지수라는 집계지표(aggregate index)를 사용한데 비하여 본 연구는 실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개별 등록규제를 대상으로 규제부담을 측정하였다. 특별히 규제비용관리제를 적용하여 과학기술 분야 규제의 부담을 사전에 측정하고, 규제부담이 높은 규제를 발굴함으로써 우선적 폐지·개선 대상이 될 규제들을 파악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I. 분석방법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관련 규제를 다양한 분류기준을 활용하여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부담을 측정하였다. 과학기술 분야 규제개혁의 전제조건으로서 규제가 피규제대상에게 실제로 얼마나 부담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분석대상은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등록규제 전체이며 최초 등록 시기인 1960년부터 이명박 정부 시기까지의 모든 등록규제(총 530건)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⁴⁾.

특별히 본 연구는 현 정부에서 규제개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규제비용관리제(前규제

비용총량제)⁵⁾의 규제부담 측정방식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채택하였다. 현행 규제비용관리제의 핵심은 신설·강화 규제의 규제성질, 강도, 과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부담이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폐지·완화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신설·강화 규제와 유사한 수준의 부담을 주는 폐지·완화 규제를 매칭시키는 것이 핵심이며 따라서 개별 규제들의 규제부담 측정 방식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국무조정실, 2014:10)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부록1> 참조)에 따르면 규제부담은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먼저 규제 성격(진입·가격·거래·품질·행정)별 기초지수를 계산한 다음, 규제강도·과급효과·개선정도·규제방식·일몰설정 여부에 따른 가중치의 합을 곱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규제비용관리제의 규제부담 측정방법을 원용하여 과학기술 분야 규제의 부담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규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규제부담지수』를 산출하여 규제부담을 측정하였다. 우선, 규제성격별 기초지수를 규제의 목적·성격별 유형에 따라 진입규제는 10점, 가격규제는 8점, 거래규제는 6점, 품질규제는 6점을 부여하였다. 이상의 경제적 규제와는 달리 행정적 규제는 2점 그리고 사회적 규제는 4점을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지수의 점수 차이는 일반적으로 진입규제나 가격규제 등 경제적 규제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가치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논리를 바탕으로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국무조정실, 2014:10)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중치가 기초지수에 추가되었다. 먼저, 규제강도에 관하여 Ogus(1994)의 규제수단에 의한 유형에 따라 우리나라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를 분류한 이종한·최무현(2004:45)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전승인 규제는 2, 투입 규제는 1.5 그리고 성과 및 정보제

4) 본 연구의 1차적인 관심의 초점(focus)은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규제, 즉 법과 제도에 있다. 하지만 실제 연구 대상으로 삼은 법령이 속한 분야(locus)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업무영역으로서 타부처 소관의 과학기술 관련 규제는 분석에서 제외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본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법령과 제도 개선을 분석대상으로 함으로써 특정 부처가 소관 분야의 법령을 개선하는데 적극적 주체로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5)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는 각 부처가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발생하는 순비용(직접비용·직접편익)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제도이다(김동연, 2014). 이와 같은 규제비용총량제는 2014년 7월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 후 2015년부터는 전체 부처를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규제비용관리제라는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다.

공 규제는 1의 값을 각각 부여하였다⁶⁾. 이러한 규제강도에 따른 규제유형은 국가개입의 국민의 자유침해 정도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산정한 것이다. 즉, 그 정도가 가장 적은 정보 규제는 공급자에게 사실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지만 행위의 제약을 가하지는 않는 반면, 사전승인은 공공기관 승인이 없이는 행위자체가 금지되며, 투입 혹은 산출(성과)기준은 사전 통제는 아니지만 질 기준을 미충족한 공급자를 제재한다(이종한·최무현, 2004:45).

다음으로 규제가 미치는 파급효과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3, 해당 과학기술 분야 전체를 규제하는 경우 2, 특정 개개인이나 단체가 규제대상인 경우 1을 부여하였다. 규제개선 정도는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하여 어느 정도 부담이 개선될 수 있는가를 말한다. 이것은 규제를 새로이 입안하는 기관 및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될 수 있는 지표이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규제개선 정도의 대리지표로 등록규제가 근거로 하고 있는 법적 근거가 법률인지 혹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활용하였다⁷⁾. 여기서 특정 규제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을 경우는 국회의 입법개정이 필요하므로 규제개선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았고, 시행령에 근거할 경우는 행정입법의 영역이므로 상대적으로 규제개선 정도는 중폭이라고 보았다. 또한 시행규칙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등록규제의 경우는 법률이나 시행령에 비해 규제개선 정도를 소폭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한편, 일몰(sunset) 규제 여부 역시 가중치 산정에 반영되었다. 여기서 일몰규제란 특정 규제에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폐지 혹은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의 규제를 말한다. 규제는 일단 생성되면 특별한 변동이 없는 이상 존속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현재 산업·시장 상황에 맞도록 재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몰규제 방식을 활용하여 국

6) 「사전승인」은 규제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시키는 형태이고, 「투입기준」은 사전에 사용해야 하는 생산방법 혹은 재료를 정해놓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기준으로 목표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투입측면의 규제이며, 「성과기준」은 투입기준과 달리 생산의 결과물이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만을 제시하고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피규제자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는 방식이고, 「정보제공」은 정보의 공개를 강제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통제하는 규제를 말한다. 그밖에 사전승인, 투입기준, 산출기준, 정보제공 등 각 유형에 속하나 구체적인 행위유형 분류가 곤란한 경우는 기타1~4로 범주화하였다(이종한·최무현, 2004).

7) 국민생활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규제법정주의’(規制法定主義)를 천명하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법 부칙 제4조). 동 법에 의하면 행정규제는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조례규칙, 고시, 공고, 예규, 훈령)에 규정되어야 하며, 행정기관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원리이다.

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인 경우에 존속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등록규제에 설정되어 있는 일몰규제를 세분하면 일몰기한 도래 시 해당규제가 자동폐지되는 방식인 효력상실형 일몰규제와 주기적으로 일몰기한 도래 시 당해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존속·개선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인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구분된다. 이에 효력상실형은 0.5, 재검토형은 1, 그리고 일몰이 미설정된 규제는 1.5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규제의 입법기술 형식 상 포지티브 규제인 경우 1.5, 네거티브 인 경우는 0.5점을 부여하였다. 이상 규제부담지수 산출방식은 다음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표 2> 본 연구의 규제부담지수 산출방식

	규제분류	해당 규제의 내용	부여 값
규제 성격별 기초지수	경제적 규제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로 가격결정, 경쟁조건, 시장진입 및 퇴출 등과 같은 시장에 관한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규제	진입규제=10, 가격규제=8, 거래규제=6, 품질규제=6
	사회적 규제	보건, 안전, 환경 및 사회적 통합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4
	행정적 규제	행정규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부수되는 절차, 요식행위, 서류작성 등과 관련된 규제	2
규제강도	사전승인	허가, 인가, 면허, 특허, 승인, 지정, 동의, 기타1	2
	투입기준	검사, 인정, 확인, 증명, 기타2	1.5
	성과기준	결정, 지도, 단속, 행정질서벌, 기타3	1
	정보제공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기준설정, 금지, 기타4	1
과급효과	전국민	규제의 과급효과가 전국민에게 미치는 경우	3
	해당분야 전체	해당 과학기술 분야 전체를 규제하는 경우	2
	개별 피규제자	특정 개개인이나 단체가 규제대상인 경우	1
개선정도	대폭	규제의 모범이 법률인 경우	1.5
	중폭	규제의 모범이 시행령인 경우	1
	소폭	규제의 모범이 시행규칙 및 고시 등인 경우	0.5
일몰여부	효력상실형	일몰기한 도래 시 해당규제가 자동폐지되는 방식	0.5
	재검토형	주기적으로 일몰기한 도래 시 당해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존속·개선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1

	미설정	일몰 방식이 설정되지 않은 규제인 경우	1.5
네거티브	네거티브	특정한 금지 행위를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다른 행위는 허용하는 방식	0.5
	포지티브	법령 등의 형태로 특정되거나 규정된 행위만 허용되며 나머지는 허용되지 않는 방식	1.5

이상의 기준을 토대로 규제부담 계산을 위한 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규제부담(지수)} = \text{성격별 기초지수} \times (\text{규제유형별 가중치의 합})^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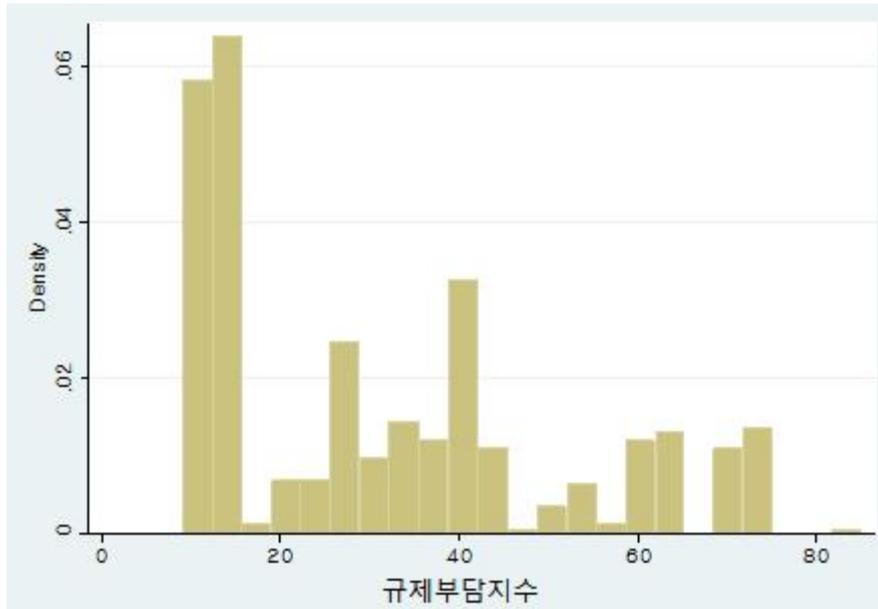
IV. 분석결과 및 해석

1. 과학기술규제 부담 현황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등록규제 총 530건에 대한 규제부담지수를 측정한 결과, 평균 31.40, 표준편차 20.27이었으며, 최소값 9, 최대값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부담지수에 따른 순위는 <부록2>에, 그리고 평균값 이상의 규제부담을 갖는 등록규제(총230개) 목록은 <부록3>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8) 이 방식은 법령의 내용을 분석하여 규제부담 정도를 측정한 이종한(2013) 등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에서 현행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의 부담측정방법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서 규제부담지수는 원칙적으로 최저7점에서 최대 95점까지 분포가 가능하다.

〈그림 1〉 규제부담지수의 분포



2. 정책분야별 규제부담지수

미래창조과학부가 관장하는 정책분야를 크게 연구개발진흥 정책분야(제1차관 소관)와 방송정보통신 정책분야(제2차관 소관)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표 3> 참조), 연구개발진흥 관련 규제는 108건(20%), 방송정보통신 관련 규제는 422건(80%)이었다. 연구개발진흥 관련 규제들의 규제부담은 평균 29.03(표준편차 20.43)으로, 방송정보통신 관련 규제들의 규제부담 평균 32.00(표준편차 20.2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분야별 규제부담지수의 분포는 아래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정책분야별 규제부담지수

규제부담지수(점수)	연구개발 진흥정책분야(건수)	방송정보통신정책분야(건수)	총계(건수)
9	0	1	1
10	4	9	13
11	10	28	38
12	9	41	50
13	15	52	67
14	5	18	23
15	3	19	22
17	0	2	2
20	1	1	2
22	5	5	10
24	4	8	12
26	16	15	31
27	0	1	1
28	3	8	11
30	2	15	17
33	0	23	23
34	0	2	2
36	1	20	21
39	4	41	45
42	2	10	12
44	0	1	1
45	4	14	18
48	0	1	1
50	0	3	3
51	1	2	3
52	2	0	2
55	1	8	9
56	0	2	2
60	2	19	21
65	6	17	23
70	1	18	19
75	6	18	24
85	1	0	1
평균 (표준편차)	29.03 (20.43)	32.00 (20.21)	
건수	108	422	530
비중(%)	20	80	100

3. 입법유형(정부입법/의원입법)별 규제부담지수

등록규제 근거법률(모법)의 발의자가 정부인지 국회의원인지의 여부로 구분하여 규제부담을 살펴본 결과(<표 4> 참조), 정부입법 규제는 475건(90%), 의원입법 규제는 55건(10%)이었다. 정부입법 규제들의 규제부담은 평균 32.04(표준편차 20.26)로, 의원입법 규제들의 규제부담 평균 25.85(표준편차 19.7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 규제부담지수의 분포는 아래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입법유형(정부입법/의원입법)별 규제부담지수

규제부담지수(점수)	정부입법(건수)	의원입법(건수)	총계(건수)
9	1	0	1
10	13	0	13
11	28	10	38
12	45	5	50
13	59	8	67
14	21	2	23
15	16	6	22
17	2	0	2
20	2	0	2
22	8	2	10
24	11	1	12
26	28	3	31
27	1	0	1
28	8	3	11
30	15	2	17
33	23	0	23
34	2	0	2
36	20	1	21
39	42	3	45
42	11	1	12
44	1	0	1
45	18	0	18
48	1	0	1
50	3	0	3
51	3	0	3
52	2	0	2
55	9	0	9

56	2	0	2
60	19	2	21
65	21	2	23
70	18	1	19
75	21	3	24
85	1	0	1
평균 (표준편차)	32.04 (20.26)	25.85 (19.73)	
건수	475	55	530
비중(%)	90	10	100

4. 집행기관별(분권화여부) 규제부담지수

등록규제를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집행하는지 아니면 지방 및 민간기관에 위임되어 집행되는지로 규제집행의 분권화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직접집행(집권) 규제는 511건(96%), 지방·민간기관 위임 집행(분권) 규제는 19건(4%)이었다. 집권 규제들의 규제부담은 평균 31.56(표준편차 20.34)으로, 분권 규제들의 규제부담 평균 27.11(표준편차 18.4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 규제부담지수의 분포는 아래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집행기관별(분권화여부) 규제부담지수

규제부담지수(점수)	중앙행정기관 직접집행(건수)	지방·민간기관 위임집행(건수)	총계(건수)
9	1	0	1
10	11	2	13
11	35	3	38
12	48	2	50
13	67	0	67
14	22	1	23
15	22	0	22
17	2	0	2
20	2	0	2
22	9	1	10
24	10	2	12
26	29	2	31
27	1	0	1

28	11	0	11
30	17	0	17
33	23	0	23
34	2	0	2
36	21	0	21
39	42	3	45
42	12	0	12
44	1	0	1
45	18	0	18
48	1	0	1
50	3	0	3
51	3	0	3
52	2	0	2
55	8	1	9
56	2	0	2
60	21	0	21
65	21	2	23
70	19	0	19
75	24	0	24
85	1	0	1
평균 (표준편차)	31.56 (20.34)	27.11 (18.43)	
건수	511	19	530
비중(%)	96	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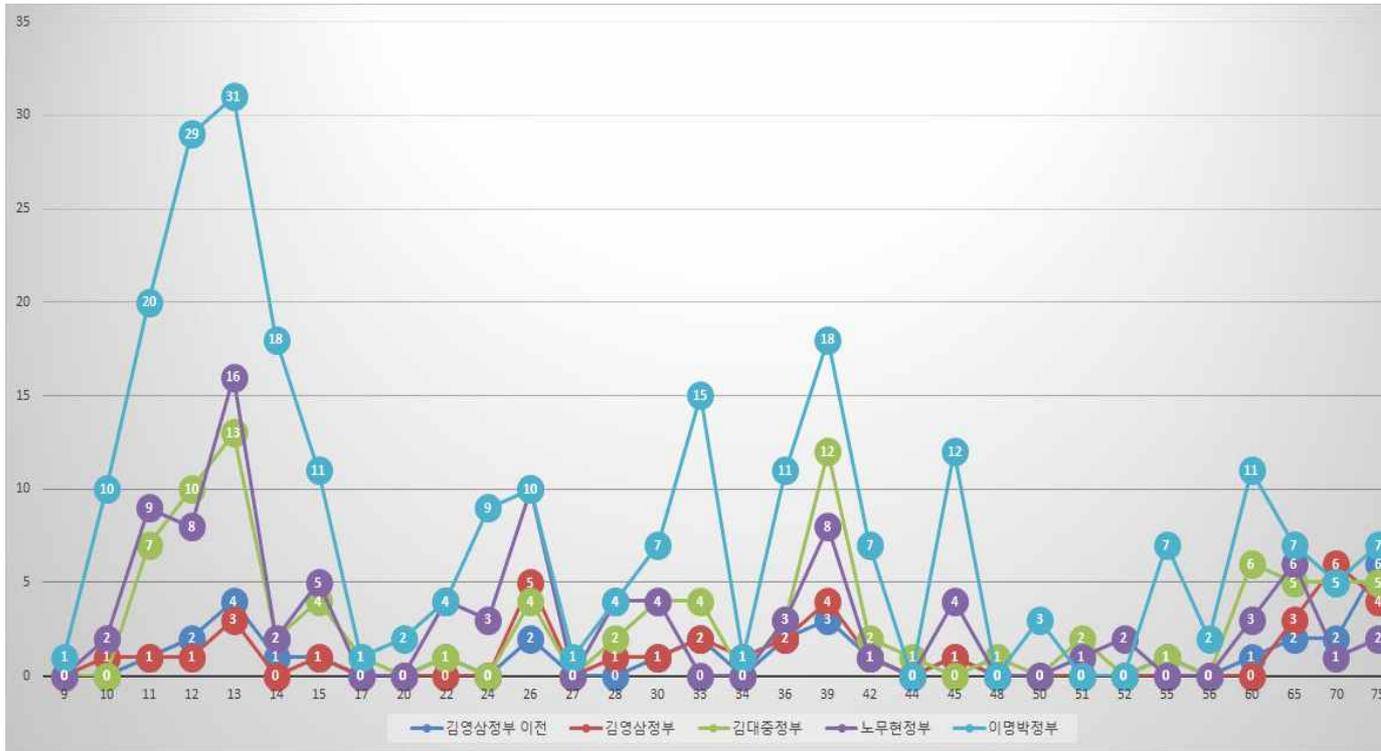
5. 정부시기별 규제부담지수

등록규제가 공포된 정부시기별로 규제부담을 살펴본 결과, 김영삼정부 이전에 만들어진 규제는 34건(6%), 김영삼정부 시기 규제는 38건(7%), 김대중정부 시기 규제는 95건(18%), 노무현정부 시기 규제는 99건(19%), 이명박정부 시기 규제는 264건(50%)로 정권이 지날수록 규제의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비해 각 시기별 규제들의 규제부담은 김영삼정부 이전 평균 41.09(표준편차 23.73), 김영삼정부 시기 평균 42.24(표준편차 22.51), 김대중정부 시기 평균 33.94(표준편차 21.35), 노무현정부 시기 평균 28.79(표준편차 18.96), 이명박정부 시기 평균 28.66(표준편차 18.61)로서 정권이 지날수록 규제부담은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부시기별 규제부담지수의 분포는 아래 <표 6>과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정부시기별 규제부담지수

규제부담 지수(점수)	김영삼정부 이전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총계(건수)
9	0	0	0	0	1	1
10	0	1	0	2	10	13
11	1	1	7	9	20	38
12	2	1	10	8	29	50
13	4	3	13	16	31	67
14	1	0	2	2	18	23
15	1	1	4	5	11	22
17	0	0	1	0	1	2
20	0	0	0	0	2	2
22	1	0	1	4	4	10
24	0	0	0	3	9	12
26	2	5	4	10	10	31
27	0	0	0	0	1	1
28	0	1	2	4	4	11
30	1	1	4	4	7	17
33	2	2	4	0	15	23
34	0	1	0	0	1	2
36	2	2	3	3	11	21
39	3	4	12	8	18	45
42	1	1	2	1	7	12
44	0	0	1	0	0	1
45	1	1	0	4	12	18
48	0	0	1	0	0	1
50	0	0	0	0	3	3
51	0	0	2	1	0	3
52	0	0	0	2	0	2
55	1	0	1	0	7	9
56	0	0	0	0	2	2
60	1	0	6	3	11	21
65	2	3	5	6	7	23
70	2	6	5	1	5	19
75	6	4	5	2	7	24
85	0	0	0	1	0	1
평균 (표준편차)	41.09 (23.73)	42.24 (22.51)	33.94 (21.35)	28.79 (18.96)	28.66 (18.61)	
건수	34	38	95	99	264	530
비중(%)	6	7	18	19	50	100

〈그림 2〉 정부시기별 규제부담지수의 변화



6. 과학기술 규제부담지수의 영향요인 분석

앞에서 살펴 본 다양한 규제유형의 차이가 규제부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규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이념, 이해관계 및 제도적 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⁹⁾(김권식·이광훈, 2014). 이와 같은 차원에 따라 주요 영향요인을 식별한 결과, 이념적 요인은 정권별 이념차이, 이해관계 요인은 입법행위자인 의원과 정부에 의한 입법 여부, 제도적 요인은 중앙 및 지방 간 규제집행 상 분권화 여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의 관할 정책분야를 연구개발진흥 분야와 방송정보통신 분야로 대별하여 이러한 분야별 차이에 따라 규제부담이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규제부담지수를 종속변수(Y)로 하고 앞에서 식별한 각각의 규제유형들을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분석모형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OLS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Y = \beta_1 + \beta_2(\text{연구개발진흥정책 여부}) + \beta_3(\text{의원입법 여부}) + \beta_4(\text{분권화 여부}) + \beta_5(\text{김영삼정부}) + \beta_6(\text{김대중정부}) + \beta_7(\text{노무현정부}) + \beta_8(\text{이명박정부}) + \beta_9(\text{Ln GDP}) + \epsilon$$

〈표 7〉 규제부담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Coef. (t-value)	P>t
연구개발진흥정책 여부	-3.55 (-1.51)	0.132
의원입법 여부	-6.49 (-2.13)	0.034
분권화 여부	-3.92 (-0.84)	0.402
김영삼정부	-3.31 (-0.59)	0.552
김대중정부	-12.31 (-2.33)	0.020

9) 예를 들면, 최병선(1998)은 규제완화 정치의 세가지 측면으로 아이디어의 정치, 이익집단의 정치, 제도적 기초와 역학을 들고 있으며, Peters(2002) 역시 정책수단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로서 이른바 3i, 즉 아이디어(idea), 이해관계(interest), 제도(institution) 등을 제시하고 있다(김권식·이광훈, 2014:173 재인용)

노무현정부	-15.07 (-2.63)	0.009
이명박정부	-19.22 (-3.32)	0.001
명목GDP(로그값)	2.01 (1.25)	0.213
상수항	20.39 (1.11)	0.269

주: N=530; Adj R-squared=0.0520; 정권별 더미변수는 김영삼정부 이전 시기를 기준으로 함. 명목GDP는 한국은행 자료임.

<표 7>의 분석결과를 보면, 통제변수인 명목GDP를 제외하고 모든 독립변수들의 회귀계수의 부호가 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수는 연구개발 정책 여부(유의수준 15%), 의원입법 여부(유의수준 5%), 김대중정부 시기(유의수준 5%), 노무현정부 시기(유의수준 1%), 이명박정부 시기(유의수준 0.1%)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첫째, 연구개발 진흥 관련 규제의 경우 방송정보통신 분야 규제보다 상대적으로 규제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향후 방송정보통신 관련 규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연구개발 진흥 분야는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 방식의 개입보다는 재정적 지원이나 인센티브 제도가 주를 이루는 데 비해, 방송정보통신 분야는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정부의 규제적 개입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개별 정책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입법이 의원입법보다 규제부담이 평균적으로 높은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입법주체의 차원에서 해당 규제 근거법률의 발의주체가 정부인 경우에는 의원일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담이 높은 규제를 만드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 등록규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정부입법 방식의 규제가 그간 상당히 높은 규제부담을 미쳐왔음을 시사한다. 또한 의원입법과 달리 정부입법에는 사전적 심의절차로서 규제영향평가제도가 적용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기존에 실시되어 온 규제영향분석 제도가 실제 규제부담을 저감시키는 데 충분히 효과적이지는 못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셋째, 정권별 규제부담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김영삼정부 이전 시기에 비하여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시기의 규제부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대중정부 이래 각 정부가 추구하는 이념적 좌표와는 별개로 규제개혁이 지속적

인 화두가 되어옴에 따라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규제 형성과정에서 규제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방향의 경향이 존재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V. 결론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창출을 위해서는 재정지원 등 유인적 정책수단의 동원과 함께 혁신을 저해하는 과학기술 규제 개선 또한 동시에 요구된다.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관할 등록규제를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 및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과학기술 분야 규제 개혁 과제를 도출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규제개혁 관련 이론적 문헌 및 실증연구 검토를 통해 규제비용관리제를 원용한 규제부담 측정방법을 도출하고 규제부담 지수를 산출한 후 양적 분석기법을 활용, 과학기술 규제 형성의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규제개혁이 단순한 규제건수의 감소라는 양적 접근을 넘어 개별 규제의 특성과 품질을 고려한 규제부담의 체계적 측정에 기초할 때 효과적인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수행되었다. 향후 규제개혁의 관점에서 규제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경제적 규제 가운데 진입, 가격, 거래, 품질 규제에 대한 규제부담 저감 조치는 물론 행정·사회적 규제 역시 규제품질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사전승인 혹은 투입위주의 규제방식을 규제 비용의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규제수단인 성과, 시장유인, 정보제공 등의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최병신, 2009; 최유성·최무현, 2012). 또한 신설 규제의 경우 네거티브형 입법기술 형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효력상실형 일몰 적용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비현실적·획일적 규제 유지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재검토형 일몰을 제한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김유환, 2008; 김동연, 2014).

특히 본 연구에서 탐색한 규제부담의 영향요인 분석결과는 높은 규제부담을 초래하는 다양한 차원의 요인들을 식별하여 이에 대응한 규제개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특히 개별정책 분야, 입법주체 및 정권별 차이가 규제부담의 수준을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만하다.

기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특정부처(미래부)의 업무영역에 한정된 것이다. 따라서 다소 이질적인 성격의 자료들이 분석대상 자료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관련 타부처 소관 법령은 제외되어 분석결과의 이론적 정밀도를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현행 규제등록제도의 틀 안에서 과학기술분야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업무분야를 망라하는 규제법령을 분석함으로써 주무 부처의 입장에서 소관 분야의 정책 입안에 보다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규제지수를 작성하는데 가중치 역할을 수행하는 규제강도의 추정에 있어 주관성 개입 및 척도(scale)의 불완전성 등에 대하여 가중치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규제개선정도의 폭이나 규제의 성격, 그리고 규제의 과급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등에 대한 판단에 자의성이 개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¹⁰⁾. 하지만 보다 합리적인 가중치 산정을 위한 규제부담 측정 노력에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Al-Ubaydli & P.A. McLaughlin(2012), 이종한(2013) 등 규제강도 및 부담의 측정을 시도한 선행연구들의 논의와 현행 규제비용관리제의 규제부담 측정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등록규제의 규제부담 측정결과는 향후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증거기반 규제정책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적으로 과학기술 분야 규제개혁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R&D 성과를 저해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들을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개발성과를 제고하는 데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 이와 같은 가중치의 자의성 및 척도(scale) 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 우리나라의 규제비용관리제 하에서도 규제비용을 산정할 때 실제 발생하는 비용·편익을 우선적으로 추정하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규제부담 산정방식은 규제순비용 추정이 불가능하거나 적절치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차선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물론 규제비용을 금전적으로 직접 추정하는 것이 당연히 최선의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향후 시행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비용편익을 추정하는 것은 많은 가정과 추정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다. 나아가 비용추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많은 바 이러한 경우에 다른 방식에 의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규제부담을 굳이 금전적 비용 추정방식으로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는 왜곡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1) 가령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기법 등을 활용하여 수백 개의 개별 법령 조문에 대한 규제부담을 측정하는 경우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이경 외(2015)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기반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국무조정실(2014)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
- 김권식·이광훈(2014) 환경규제 수단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 탐색 - 지방분권화, 입법주체 및 규범형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1호, pp. 167-192.
- 김권식·안승구·이종한·이광훈(2016) 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연구 제25권 제1호, pp. 91-111.
- 김동연(2014)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한국경제포럼 제7권 1호.
- 김유환(2008) 규제방식의 유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규제개혁위원회.
- 심영섭(2013) 창의와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 규제연구 제22권 특집호, pp. 3-35.
- 이종한·최무현(2004) 국민의 정부의 규제개혁 성격에 관한 실증 연구 -규제개혁 위원회 등록규제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3(2):37-66.
- 정승일 외(2007) 「정부규제가 기업의 기술혁신 행태에 미치는 영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최병선(1998) 규제완화의 정치: 사상, 이해관계, 제도의 역학, 진창수(편). 『규제완화의 정치: 비교연구』, 경기도 성남시: 세종연구소, 1998.
- 최병선(2009) 규제수단과 방식의 유형 재분류, 행정논총 제47권 2호.
- 최유성·최무현(2012) 현행 규제등록제도하의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규제연구 제21권 1호.
- Al-Ubaydli, O. & Patrick A. McLaughlin (2012) "The Industry-specific Regulatory Constraint Database (IRCD): A Numerical Database on Industry-Specific Regulations for All U.S. Industries and Federal Regulations, 1997-2010". IRCD Working Paper. June
- Ogus, Anthony I. (1994) *Regulation: Legal Form and Economic Theory*. Oxford, UK: Clarendon Press.
- Peters, Guy. (2002) "The Politics of Tool Choice". In Salamon, L.M. (ed.). *The Tools of Govern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Key Policy Issues for Regulatory Reform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Focusing on the registered regulations under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Lee, Kwang-Hoon & Kim, Kwon-Sik

Despite the abundance of research on regulatory reforms of Korea, little effort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S&T) field has been accumulated. This article thus attempts to measure regulatory burden of the registered regulations under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during 1960 and 2012, by employing the analytical framework of regulation cost manage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cost in, cost out'). Further,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 that various factors affected the level of the regulatory burden. The regulatory burden index which this article first calculated may contribute to evidence-based regulation policy decision-making in regulatory reforms of Korea.

Key words: Regulatory Burden, S&T Regulation, R&D, IT, Regulation Cost

〈부록1〉 규제비용관리의 규제부담 측정방법

i) 규제성격별 기초지수

구분	진입규제	가격규제	거래규제	품질규제	행정규제
기초지수	10	8	6	6	2

ii) 가중치 기준

• 규제강도

	가중치		
	2	1.5	1
진입규제	원칙금지(허가)	일부허용(인가·등록)	일반허용(신고)
가격규제	전면통제(허가)	사전통제(인가)	사후통제(신고)
거래규제	원칙금지(허가)	거래조건 제한	기준설정(가이드라인)
품질규제	전면통제(허가)	사전통제	사후통제(신고)
행정규제			정보제공 의무

• 규제 파급효과(영향집단)

구분	1,000만명 이상	100만~1,000만명	100만명 이하
가중치	3	2	1

• 규제개선 정도

구분	대폭	중폭	소폭
가중치	1.5	1	0.5

• 규제방식

구분	Positive	혼합·기타	Negative
가중치	1.5	1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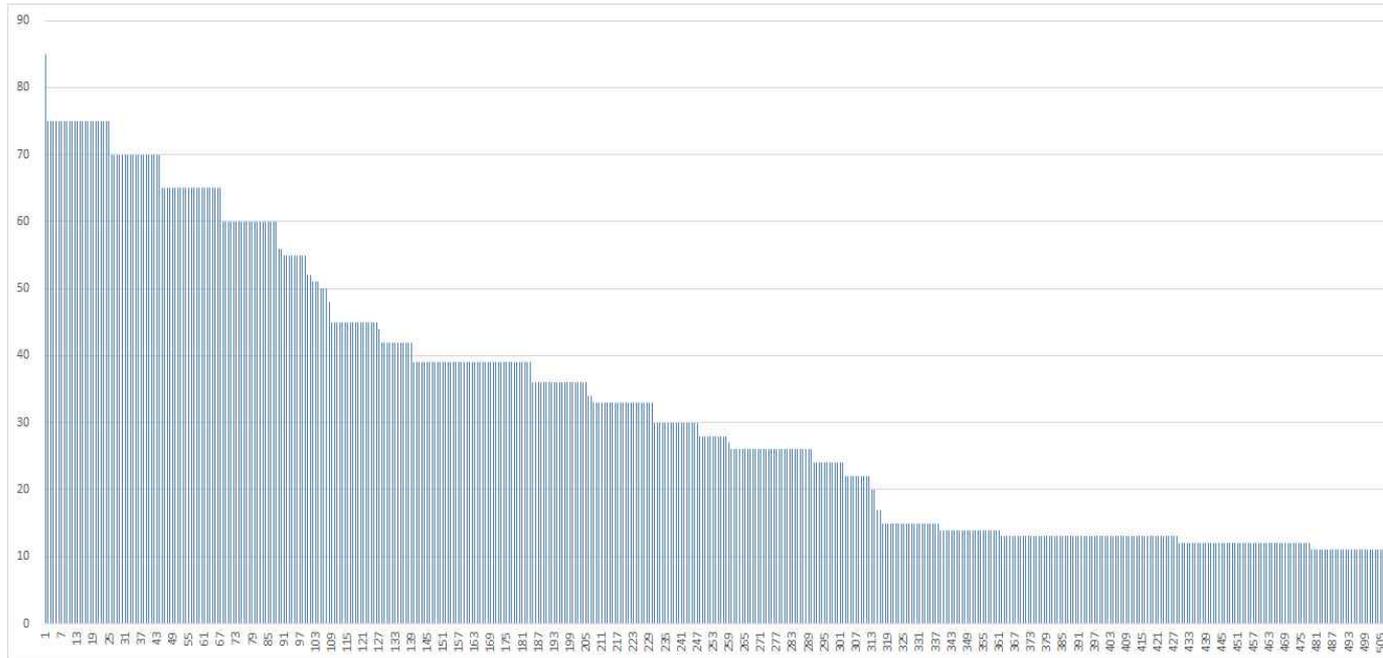
• 일몰

구분	미설정	재검토형 일몰	효력상실행 일몰
가중치	1.5	1	0.5

iii) 최종점수 = 규제성격별 기초지수 × ∑가중치 (최저7점~최고95점)

출처: 국무조정실(2014:10)

〈부록 2〉 규제부담지수에 따른 순위



주: 세로축은 규제부담지수, 가로축은 순위임.

〈부록 3〉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등록규제별 규제부담지수(평균값 이상)

순위	규제 부담 지수	규제사무명	법령명	순위	규제 부담 지수	규제사무명	법령명
1	85	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제1항	26	70	유선방송사업 허가	방송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15조, 제16조
2	75	조합의 설립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7조	27	70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조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3	75	명칭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4조	28	70	공제조합의 사업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21조
4	75	조합의 설립인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	29	70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24조
5	75	정관의 기재사항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9조	30	70	공제조합의 등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20조
6	75	정관의 변경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0조	31	70	출자 및 출자증권 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5조
7	75	사업의 양수, 법인의 합병 등에 대한 인가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32	70	출자증권의 명의 개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26조
8	75	주식취득에 관한 특례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4조	33	70	공제조합의 보고사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28조
9	75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신청 및 인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7조, 제30조, 제31조	34	70	공인인증기관 지정	전자서명법 제4조
10	75	정관기재사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7조	35	70	방송법상 변경허가, 변경승인, 변경등록	방송법 시행령 제15조
11	75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8조	36	70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12	75	공제규정의 승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30조 3항	37	70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의2
13	75	방송법상 허가 등의 신청 및 검사에 대한 수수료	방송법 제102조	38	70	공인인증기관의 갱신지정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의3
14	75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	방송법 제9조 내지 제10조	39	70	준공검사전 토지 등의 사용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15	75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 제1항	40	70	양수 및 합병 등 인가신청의 첨부서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0조
16	75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 제2,3,4항	41	70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의 첨부 서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0조
17	7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1항	42	70	변경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9조
18	75	하도급의 승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43	70	외국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의 승인	방송법 시행령 제11조
19	75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9조	44	70	기간통신사업자양수및합병등의인가대상범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8조제5항
20	75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등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45	65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방송법 제18조, 제19조
21	75	역부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46	65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22	75	이행강제금의 부과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의2	47	65	기술사사무소 등록	기술사법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2조
23	75	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전파법 제19조	48	65	주식의 발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
24	75	신고를 통한 무선국의 개설	전파법 제19조의2	49	65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25	75	공인전자문서증여자 지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50	65	공인인증기관 결격사유	전자서명법 제5조

순위	규제 부담 지수	규제사무명	법령명	순위	규제 부담 지수	규제사무명	법령명
51	65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등	전자서명법 제12조	76	60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의 기한 및 의무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
52	65	주파수 할당의 결격사유	전파법 제13조	77	60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우주손해배상법 제6조
53	65	유료방송의 이용요금 승인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위원회 회규칙 제29조	78	60	전기통신설비 매각의 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
54	65	온라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의 지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79	60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의 신청서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6조
55	65	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	80	60	부가통신사업의신고절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56	65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81	60	사전선택 대상역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0조
57	65	준공검사전 사용허가신청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82	60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기준	방송법 시행령 제14조
58	65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의 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83	60	전송망사업 등록의 제출 서류	방송법 시행령 제12조
59	65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3,1항, 7항	84	60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대상 및 방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조
60	65	소프트웨어기술자 변경신고시 허위 신고금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3 3항,7항	85	60	방송연장 명령을 받은 사업자의 의무	방송법 시행령 제17조
61	65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86	60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62	65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고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87	60	개발이익의 채투자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
63	65	기간통신사업 허가의 결격사유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2	88	60	취약계층요금감면서비스 및대상자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
64	65	외국방송관련위반행위에 대한과태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89	56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승인시 제출 서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4조
65	65	외국방송의 재송신채널 허용범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2	90	56	번호안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
66	65	개발이익의채투자범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91	55	전송망사업의 등록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제17조
67	65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력,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92	55	방송사업의 소유 및 겸영제한	방송법 제8조제2항내지제4항, 제9항
68	60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	93	55	외국인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등 인정기준(고시)	외국인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등 인정기준
69	60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2조	94	55	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
70	60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제한	방송법 시행령 제14조	95	55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방송법 제19조(과징금 처분)
71	60	방송법상 수수료의 기준	방송법 시행령 제67조	96	55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별표2
72	60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97	55	대표번호 사용원칙 및 용도변경 방법	전기통신번호관리제칙 제20조제7항, 별표2, 별표3
73	60	정보통신망 표준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8조제4항 및 제5항, 제9조	98	55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74	60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	99	55	사업시행자의지정취소 기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75	60	대기업 참여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100	52	부지등 양도승인신청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순위	규제부담지수	규제사무명	법령명	순위	규제부담지수	규제사무명	법령명
101	52	손해배상책임한도액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	126	45	국제로밍서비스 계약에 관한 승인기준(고시)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제5항
102	51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의무	전자서명법 제23조	127	44	전송·선로설비의 이용약관 신고	유선방송사업및전송망사업의허가및등록등에관한규칙
103	51	타인사용의 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	128	42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보고·검사	전기통신기본법 제45조
104	51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129	42	정보통신공사의 감리 등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8조
105	50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제3항, 별표9	130	42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검사	전자서명법 제14조
106	50	선불통화사업자의의무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제1,2항	131	42	인증업무에 관한 설비의 운영	전자서명법 제19조
107	50	선불통화서비스제공에따른자료제출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제1,2,4항	132	42	입주승인 취소후 잔부처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108	48	유료방송의 약관 승인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위원회규칙 제29조	133	42	특구개발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 및 개발사업을 마친 때의 준공검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
109	45	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사정명령	전기통신기본법 제27조	134	4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전파법 제58조의2
110	45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4	135	42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전파법 제58조의2제3항
111	45	특구개발사업 시행 대행자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136	4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	전파법 제58조의2제6항
112	45	경매 등에 의한 부자·시설 또는 건축물의 취득 등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137	42	사전통관 신청 수입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전파법 제58조의3제2항
113	45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우주손해배상법 제4조	138	4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전파법 제58조의2
114	45	권리행사의 기간	우주손해배상법 제8조	139	4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전파법 제58조의2
115	45	이용약관의 신고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140	39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에 관한 설계도서의 작성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
116	45	비상시의 통신의 확보	전기통신기본법 제22조	141	39	토지등의 일시사용	전기통신사업법 제73조
117	45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허용의무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	142	39	전송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방송법 시행령 제63조
118	45	번호이동성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4	143	39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협정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6
119	45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	144	39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 등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17조
120	45	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등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의2	145	39	정보통신공사의 제한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3조
121	45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협정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6	146	39	정보통신공사 기술기준의 준수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6조
122	45	합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및 재할당	전파법 제15조, 제16조	147	39	공인인증서의 발급	전자서명법 제15조
123	45	주파수 할당	전파법 제10조	148	39	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전자서명법 제17조
124	45	기간통신사업자의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의무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	149	39	인증업무의 양수 등	전자서명법 제9조
125	45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허용의무	전기통신사업법 제41조	150	39	공인인증서의 폐지	전자서명법 제18조

순위	규제부담지수	규제사무명	법령명	순위	규제부담지수	규제사무명	법령명
151	39	시정명령	전자서명법 제11조	176	39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
152	39	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	전자서명법 제21조	177	39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고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
153	39	인증업무의 휴지·폐지 등	전자서명법 제10조	178	39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고시)	전기통신사업법 제41조제2항
154	39	유선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준공검사	방송법 시행령 제62조	179	39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고시)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
155	39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방송법 제69조	180	39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고시)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
156	39	전자문서 공개 금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7조	181	39	전기통신설비등의 배수	전기통신기본법 제32조
157	39	전자문서 보관의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제67조	182	39	지상파 디지털튜너 내장의무 관련전자제품에 관한 고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
158	39	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의무	전자서명법 제18조의3	183	39	설비등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
159	39	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5	184	39	주파수이용권의 양도 제한 등	전파법 제14조
160	39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시행자의 토지사용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185	36	무선국 검사	전파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제20조
161	39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입주승인 및 취소 등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186	36	과태료 부과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55조
162	39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부지의 양도제한 등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76조	187	36	정보통신공사 도급의 분리	정보통신공사법 제25조
163	39	인증업무의 장애발생 신고	전자서명법 제22조의3	188	36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정보관리 등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 제27조
164	39	공인인증기관의 손해배상 가입의무	전자서명법 제26조	189	36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	전자서명법 제22조
165	39	임원의 결격사유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2	190	36	채널의 구성과 운영기준 준수 의무	방송법 시행령 제53조내지제56조의2
166	39	입주승인신청서 등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191	36	인증업무 시설 및 장비의 정기점검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13조의5
167	39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6	192	36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예방 및 원인분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의4
168	39	무선국 시설자의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승인 의무	전파법 시행령 제69조	193	36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169	39	사전선택제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3	194	36	방송사업별 프로그램 편성 기준	방송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0조 내지 제52조의2
170	39	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	전기통신기본법 제31조	195	36	과징금의 납부절차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22조
171	39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전기통신기본법 제18조	196	36	인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협정의 제출 서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
172	39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조	197	36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신고서 제출서류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11조
173	39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고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198	36	공동구축 전문가 선정 및 자료 조사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174	39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업무와 기간통신사업자(고시)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업무와 기간통신사업자	199	36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15조
175	39	사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확신과급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	200	36	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순위	규제부담지수	규제사무명	법령명	순위	규제부담지수	규제사무명	법령명
201	36	통합운영사업자의 선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29조	216	33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202	36	통합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30조	217	33	무선설비규칙(고시)	무선설비규칙
203	36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용에 관한 고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218	33	시의전화 사전선택제 시행기준(고시)	시의전화 사전선택제 시행기준
204	36	설비에대한자료제출절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안 제39조제1항	219	33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고시)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205	36	이용약관의 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220	33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	방송법 제100조
206	34	긴급상황시 전기통신업무 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5조	221	33	도매제공의무서비스지정(안제3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207	34	통신비밀의 보호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222	33	도매제공 대가산정의 원칙(안 제23조 제3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208	33	정보통신망 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의무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	223	33	해상업무용무선기기전자파보호기준	전자파 보호기준 제13조의2조, 별표 10
209	33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준수 의무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224	33	방송수신기의내성기준	전자파 보호기준 별표 4
210	33	통신제한관리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4	225	33	기가헤르쯔(GHz)대역전자파방사기준	전자파 장애 방지기준 별표9, 별표 12
211	33	정보통신공사의 기술보유자 현장배치 의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4조	226	33	해상업무용무선기기전자파장애방지기준	전자파 장애 방지기준 별표 13
212	33	양수 및 합병의 신고 등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6조	227	33	대표번호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1조의2, 별표2
213	33	인증업무의 휴지·폐지의 신고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7조	228	33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고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별표3 (제4조 관련)
214	3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업무 관련기록·자료 관리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 제12조	229	33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215	33	인증업무시설 보호조치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230	33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